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의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8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	4
1. 제정안의 입법 취지	4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5
3. 현행 검시제도의 운영절차	8
4. 검시제도 개선(법의관제도 도입) 관련 국회 논의 경과	9
5. 법의관제도 입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	12
6. 법의관 운영 현황 및 기대 효과	13
IV. 조문별 검토	16
1. 목적, 정의, 종합계획의 수립 등	16
2. 법의관의 자격, 직무 및 직무의 대행	20
3. 법의관의 의무 및 수사기관의 협조 등	25
4. 자료 요청 및 검시 관련 기록 보존 등	28
5. 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31
6. 권한의 위임, 벌칙 및 과태료	34
7. 부칙	3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선미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8.
3. 회부연월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죽음에 얽힌 다양한 이슈가 확대, 재생산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해당함.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건들에서는 초기부터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가 검시 과정에 참여하여 과학적·전문적인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또한 법의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및 직무 수행의 독립성, 법의관의 양성과 검시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

음.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시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람의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변사체의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법의관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안 제6조).

라. 법의관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법의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법의관은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사체를 발견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변사체를 검시하고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법의관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변사체와 관련된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행정기관·단체 등에는 검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법의관은 변사체의 검시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고, 법의관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Ⅲ.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입법 취지

국민의 사인(死因)이 불명확한 경우 그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사체를 조사하는 검시(檢屍)는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검시(檢屍)는 검시(檢視)¹⁾의 일부로서 현재 검시(檢視)업무는 검사가 수행하도록 규정²⁾되어 있으나, 정확한 사인(死因)의 규명을 위하여는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가 수사 초기단계에서 검시 과정에 참여하여 과학적·전문적인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법의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및 직무 수행의 독립성, 법의관의 양성과 검시업무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려는 것임.

1) 검시(檢視)는 사망의 원인과 방법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체 및 그 현장을 조사하는 것임.

2)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법의관의 자격·직무와 법의관의 양성 및 검시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1개 조의 본칙과 2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내용>

조문	규정사항	내용
제1조	목적	- <u>검시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u> 을 규정하여 사망원인을 밝히고, 국민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려 함
제2조	정의	- <u>변사체, 검시, 법의관 등 정의 규정</u> 마련
제3조	국가의 책무	- 국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사인을 밝히는데 필요한 <u>시책을 수립</u> 하고, <u>행정정 재정적 지원방안</u> 마련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u>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u>
제5조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행안부장관은 <u>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u> 을 수립하고, <u>매년 시행계획</u> 을 수립·시행
제6조	법의관의 자격	- <u>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u> - <u>추가 요건</u> 1. <u>병리학 등</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u>전문 의 자격</u> 취득 2. 전문의 자격 취득 후 <u>법의학 및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u>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u>법의학·병리학 또는 해부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u> 4. 제15조제1항에 따라 <u>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검시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서 관련 교육과정 수료</u>
제7조	법의관의 직무	- 「형사소송법」에 따른 <u>사체의 해부, 변사체의 검안 및 부검</u> - 「사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시체의 해부</u>

조문	규정사항	내용
		-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군 의문사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사건에서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사망자의 유족 또는 관할관청이 요청하는 시체의 해부</u> - 그 밖에 사인을 밝히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제8조	직무의 대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부득이한 경우 자격요건 갖춘 자가 직무를 대행</u>(공무원의제) - <u>검시보조자가 변사체의 검시 및 의견서 작성의 일부를 대행</u>
제9조	법의학관의 의무 등	- 변사체 <u>검시의무</u> - 사인·부검 필요성 여부 등 <u>의견서 제출의무</u> - <u>범죄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지의무</u>
제10조	수사기관의 협조 등	- 변사체 발견 시 <u>현장보존 및 통지</u> - 법의학관과 <u>변사체 위치 변경 협의</u> - 법의학관의 <u>수사기록 열람 및 의견 진술 요청</u>
제11조	자료요청	- 행정안전부장관의 <u>검시에 필요한 자료요구권</u>
제12조	검시 관련 기록의 보존	- 법의학관의 검시에 관한 <u>기록 보존 의무</u>
제13조	법의학관의 독립성 보장	- 법의학관에 대한 <u>부당한 압력 행사나 직무 수행 방해 금지</u>
제14조	비밀 누설 금지 등	-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u>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u>
제15조	법의학관 양성기관의 지정	- <u>검시 관련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을 등을 법의학관 양성기관으로 지정</u> - 법의학관 양성기관에 필요한 <u>경비 지원</u>
제16조	법의학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 <u>지정취소 요건</u>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u>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3. 그 밖에 법의학관 <u>양성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년 이내 <u>재지정 금지</u>

조문	규정사항	내용
제17조	청문	- 법의관 양성기관 <u>지정 취소 시 청문</u> 실시
제18조	권한의 위임	- 행안부장관 <u>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u>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법의관 <u>직무대행자 공무원 의제</u>
제20조	벌칙	- <u>직무수행 압력행사 또는 방해</u>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u>직무상 비밀 누설</u>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1조	과태료	- <u>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기관 지정받은 자에게</u>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 칙		
제1조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제2조	법의관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u>법의관 직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u> 이 있는 의사는 <u>법의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u>

3. 현행 검시제도의 운영절차

현행 검시(檢屍)제도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음.

우선, 사법경찰관이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³⁾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22조⁴⁾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檢視)를 담당함.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검증⁵⁾을 명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시(檢屍)⁶⁾를 하는 경우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해당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주로 법의의원 의사 또는 병리과 전문의 등(이하 “경찰공의”라 함)이 참여하고 있음.

이후,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⁷⁾을 받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변사자의 검시 등)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4)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5) 검증에는 검안·부검 등이 포함됨

6) 일반적으로 검안(檢案)을 말함

7) 「형사소송법」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은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

아 부검을 수행하며, 이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무원 신분인 법의관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과 관련하여 위촉한 촉탁 법의관(외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⁸⁾이 부검을 수행하고 있음.

4. 검시제도 개선(법의관제도 도입) 관련 국회 논의 경과

(1) 법의관제도 관련 법률안 발의 경과

법의관제도를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은 총 6건이 발의되었는데,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유시민의원 대표발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제정 법률안은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의학 감정촉탁"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2조(감정) 중 부검, 검안, 법의인류학, 법치의학, 영상의학 등 감정과 관련하여 외부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감정을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촉탁법의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를 말한다.
 - 가. 대한법의학회 및 대한병리학회(이하 "관련 학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과대학 병리학 교실 또는 법의학교실 전임교원(병리전문의 소지자)
 - 나. 관련 학회에서 제2조제2호가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사 중 연구원에서 위촉한 의사
 - 다. 법의학, 법의인류학, 법치의학, 법영상의학의 조예가 깊은 의사, 치과의사 중 연구원에서 위촉한 의사, 치과의사

<법의학제도 도입 관련 제정 법률안 발의경과>

연도	제명	대표발의
2005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유시민
2014	「법의학법안」	문정림
2017	「법의학법안」	정갑윤
2021	「검시를 위한 법의학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진선미
2023	「검시를 위한 법의학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해식

(2) 법의학제도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경과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은 2005년 11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2007년 2월부터 2007년 8월 까지 네 차례 소위원회에서 심사되었고, 2008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데,

동 법률안은 검시(檢視)전문가로 하여금 검시(檢視)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검서관제도를 도입하고, 검시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며,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검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007년 해당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당시 검시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점에 대해 검시 중 사법검시⁹⁾의 비율이 98.2%에 달하므로 사법검시와 밀접한

9) 검시는 “행정검시”와 “사법검시”로 구분되며, “행정검시”는 범죄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체에 대해 전염병의 확인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검시를 말하며, “사법검시”는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행하

관련이 있는 법무부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무부의 의견¹⁰⁾에 대해, 수사기관 내에 감정기관이 소속하게 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¹¹⁾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 인력현황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검시기관을 만드는데 충분한 인력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검시기관의 설치보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기능을 확대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지적¹²⁾이 있었음.

또한, 검시가 의무화될 경우 강력범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경찰의 의견¹³⁾이 있었고, 관련되는 기관이 법무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이므로 국무조정실의 주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¹⁴⁾이 있었으며, 검시는 감정(유전자 분석 등)이라는 제도의 일부분이므로 감정 중 검시만 떼어서 그 부분에 대한 법률을 만든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¹⁵⁾도 개진됨에 따라 위원 간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동 법률안을 의결하지 못하였음.

이후 발의된 제정안은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음.

는 검시를 의미함.〔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도중진, 2005.)

10) 법무부 차관, 제26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록 p.20

1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원태 소장, 제26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록 p.16

1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원태 소장, 제26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록 p.16, 경찰청 수사국 기획수사심의관 김윤환, 제26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록 p.17

13) 경찰청 수사국 기획수사심의관 김윤환, 제26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소위원회 제1차 회의록 p.16회의록p.17

14) 이주영 위원, 제26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록 p.16-17

15) 김동철 위원, 제26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록 p.36-38. 제26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록 p. 24.

5. 법의관제도 입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

법의관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음.

법의관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¹⁶⁾은 ①초기수사단계에서 전문적인 법의학지식을 가진 법의학자가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②현행 검시제도가 다양한 목적에 따라 개별법령¹⁷⁾에 분산 규율되어 있고 검시에 관한 담당주체도 혼재되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③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나 실제로는 검사가 변사사건을 직접 검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에 의한 대행검시가 이루어지고¹⁸⁾, 이 때 검시과정에 의사(경찰공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촉탁의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법의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④현재 전문인력 양성제도가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법의관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¹⁹⁾은 ①검시제도 개선의 핵심은 검시를 담당 또는 보조할 법의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의 부

16) 하태훈,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8권제2호(2006년 12월)

박동균, 조성제, 인권보장면에서의 현행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4호(2012)

신승균,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6) 등

17) 「형사소송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사법원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 등

18)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9) 김태우, 검시제도 개선방안, 법제 통권 제658호(2013.2) 등

죽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고, ②검시는 그 본질이 사법통제를 받는 내사단계이며, 부검까지 행하여진 이후의 단계는 실질적인 수사의 성질까지 가지므로 검시의 주체는 사법통제를 받는 수사기관이어야 하며, ③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법의관을 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법체계와 다른 이질적인 영미법계의 제도를 도입²⁰⁾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고, ④검시는 검증(유전자 분석 등)제도의 일부분²¹⁾이므로 검증을 규율하는 법이 없이 검시제도만을 규율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임.

6. 법의관 운영 현황 및 기대 효과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정원 및 현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에 비해 현원이 크게 미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24년도 11월 기준으로, 법의관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은 64%가량으로 나타남.

20)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수사기관과 독립된 법의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검시가 이루어지지만,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는 검찰(또는 경찰)의 검시여부 판단에 따라 의사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게 됨.

21) 「형사소송법」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8~2024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정원·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11.
정 원	54	55	53	53	51	49	50
현 원	32	31	32	30	33	33	32

※ 자료: 행정안전부

현재 법의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간 부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증가한 부검을 기한 내에 수행하기 위해 촉탁법의관에 대한 부검 의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부검건수 집도주체별 부검 건수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11.
총건수	9,131	8,529	9,110	8,705	8,428	8,059	7,180
법의관집도	6,937	6,183	6,409	6,008	5,668	5,375	4,785
법의관현원	32	31	32	30	33	33	32
법의관 1인당 건수	216	199	200	200	171	162	149
촉탁의집도	2,194	2,346	2,701	2,697	2,760	2,684	2,395

※ 자료: 행정안전부

현재 법의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전문직 공무원²²⁾)에 해당하나 별도로 법의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

22) 「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

은 없는 상황으로 제정안은 법의학 전문인력의 자격, 권한, 업무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법의학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제정안에서 법의관의 자격, 직무 및 법의관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의관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법의관 인원 확보에 기여하여 원활한 부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 구분한다.

② 전문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③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에, 전문관은 일반직 5급에 각각 상당한다.

IV. 조문별 검토

1. 목적, 정의,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람의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에 이바지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변사체”, “검안”, “부검”, “검시”, “법의학관” 등 검시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며, 국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사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시책 수립 등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시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람의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사체”(變死體)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시체를 말한다. 다만, 명백한 병사를 제외한 사인이 불분명하거나 사인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시체를 포함한다. 변사체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안”(檢案)이란 변사체의 사망원인(이하 “사인”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사체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사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 정 안

3. **“부검”(剖檢)**이란 변사체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사체를 해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시”(檢屍)**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시업무”**란 검시 및 그와 관련하여 사인 등을 서류로 작성하거나 검시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지하는 등 검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6. **“법의관”(法醫官)**이란 이 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검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검시보조자”(檢屍補助者)**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의관의 검시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사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검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시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2. 검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3. 검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4. 검시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5. 검시업무에 필요한 기반 조성
6. 검시 관련 기록의 보존
7. 검시업무 전문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검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검시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사항

(1)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제정안의 목적은 법의관이 수행하는 검시(檢屍)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변사체”, “검안”, “부검”, “검시”, “법의관” 등 검시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의관과 검시보조자를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은 전문직공무원(수석전문관 및 의무전문관) 직위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되고 있으며, 검시보조자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되고 있음.

(2) 국가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국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사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²³⁾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사인을 밝히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의 입법례²⁴⁾에 비추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인 법의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직 중인 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감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정한 것으로 보임.

23) “재외 국민 사인 규명 사상 첫 해외 부검”, 주간동아, 2005. 10. 12.

“해외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처리될까”, 조선일보, 2010. 10. 17.

2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법의관의 자격, 직무 및 직무의 대행(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법의관을 「의료법」 제5조²⁵⁾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법의관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법의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제 정 안
제6조(법의관의 자격) 법의관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u>1. 병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전문의 자격 취득</u> <u>2.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법의학 및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u> <u>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 또는 해부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u> <u>4.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검시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서 관련 교육과정 수료</u>
제7조(법의관의 직무) 법의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u>1.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른 사체의 해부</u> <u>2.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변사체의 검안 및 부검</u> <u>3.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체의 해부</u> <u>4.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군의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사건에서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사망자의 유족 또는 관할 관청이 요청하는 시체의 해부</u> <u>5. 그 밖에 사인을 밝히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u>
제8조(직무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의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

제 정 안
람에게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법의관으로 본다. ③ 법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시보조자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직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대행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사항

(1) 법의관의 자격(제6조)

제정안에 따르면 법의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중 어느 하나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①병리학 등 전문의 자격 취득, ②전문의 자격 취득 후 법의학 및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 ③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 또는 해부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 ④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검시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서 관련 교육과정 수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해당 요건 중 ①병리학 등 전문의 자격 취득과 ②전문의 자격

25)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취득 후 법의학 및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를 별도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①의 전문의 자격은 병리학, 해부학, 법의학 등 특수분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과 같이 “병리학 등”으로 규정하면 ②와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①에서 규정하는 전문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일정요건을 갖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법의관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이라 함)에 따라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격²⁶⁾은 의사·치과의사에게 부여되고 있으며²⁷⁾,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검안 등 감정을 위해 위촉하는 촉탁법의관도 의사와 치과의사로 한정²⁸⁾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²⁹⁾.

26)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을 것
2.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른 해부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거칠 것

27) 참고로, 검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모두 할 수 있음.

「의료법」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의학 감정촉탁”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처리 규정」 제2조(감정) 중 부

(2) 법의관의 직무(제7조)

제정안은 ①「형사소송법」³⁰⁾에 따른 사체의 해부, 변사체의 검안 및 부검, ②「시체해부법」 제6조³¹⁾에 따른 시체의 해부, ③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사건에서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사망자의 유족 또는 관할관청이 요청하는 시체의 해부 등을 법의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법의관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시체에 대한 ‘사법검시’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정안은 “변사체”의 정의에 “명백한 병사를 제외한 사인이 불분명하거나 사

검, 검안, 법의인류학, 법치의학, 영상의학 등 감정과 관련하여 외부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감정을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촉탁법의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를 말한다.

가. 대한법의학회 및 대한병리학회(이하 “관련 학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과대학 병리학 교실 또는 법의학교실 전임교원(병리전문의 소지자)

나. 관련 학회에서 제2조제2호가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사 중 연구원에서 위촉한 의사

다. 법의학, 법의인류학, 법치의학, 법영상의학의 조예가 깊은 의사, 치과의사 중 연구원에서 위촉한 의사, 치과의사

29) 참고로, 한의학과의 경우에도 전공필수 과목으로 병리학1, 병리학실습1, 병리학2, 병리학실습2, 해부학1, 해부학실습1, 해부학2, 해부학실습2, 양방병리학1, 양방병리학2 과목을 개설 중인 경우가 있음.

30) 「형법」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1)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체 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인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시체”를 포함하고 있어 ‘행정검시’ 또한 법의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법의관의 직무에 따른 검시의 종류>

법의관의 직무	검시의 종류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173조에 따른 사체의 해부	사법검시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변사체의 검안 및 부검	사법검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체의 해부	행정검시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 재해 사망, 군의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사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시체의 해부	사법검시 또는 행정검시

(3) 직무의 대행(안 제8조)

제정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법의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의관의 자격(제6조의 규정)을 갖춘 사람이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에도 경찰공의 및 촉탁법의관을 활용하여 검안 및 부검 등 검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 제8조제3항은 검시보조자에게 법의관의 직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시보조자는 법의

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검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장 조사 및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임³²⁾.

3. 법의관의 의무 및 수사기관의 협조 등(안 제9조 및 제10조)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수사기관은 변사체를 발견하였거나 그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현장을 보존하고, 그 사실을 법의관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법의관은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사체를 검시하도록 하고, 검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며,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하는 등 변사체 검시에 관한 수사기관과 법의관의 역할 및 의무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9조(법의관의 의무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의관은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사체를 발견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변사체를 검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사체가 이동된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 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사체를 검시한 법의관은 사인, 부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현재, 경찰청 검시조사관은 변사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 담당 형사에게 제공하거나 부검의에게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제 정 안

③ 제1항에 따라 변사체를 검시한 법의관은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법의관이 즉시 변사체를 검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2호의 직무 중 변사체 검안에 관한 직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대행하는 직무의 범위에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안서 발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검시업무, 서류의 작성·제출, 통지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수사기관의 협조 등) ① 수사기관은 변사체를 발견하였거나 그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현장을 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의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사고위험, 수사상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법의관과 협의하여 변사체를 적절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변사체가 발견된 당시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법의관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변사체와 관련된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검토사항

제정안은 수사기관이 변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등에 법의관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법의관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시(檢屍)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검시(檢屍)는 사망의 원인과 방법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체 및 그 현장을 조사하는 행위인 검시(檢視)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형사소송법」이 검시(檢視)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³³⁾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과 같이 범의관을 검시(檢屍) 수행의 주체로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제정안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범의관은 변사체를 발견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변사체를 검시(검안과 부검을 말함)해야 하는데, 제9조제2항에서 검시 후 사인, 부검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내용은 검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 제10조제3항은 “범의관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변사체와 관련된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료 요청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정안 제11조와 같이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33)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4. 자료 요청 및 검시 관련 기록 보존 등(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검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의관에게 검시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법의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나 직무 수행 방해를 금지하고, 검시업무를 수행하여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1조(자료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변사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행정기관·단체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검시 관련 기록의 보존) ① 법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사체의 검시에 관한 기록을 보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시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법의관의 독립성 보장)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 누설 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검토사항

(1) 자료요청(안 제11조)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³⁴⁾와 관련된 보험급여, 건강검진결과 등 자료를 이용하여 변사체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검시 관련 기록 보존, 법의관의 독립성 보장 및 비밀 누설 금지 등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정안은 법의관의 검시 기록의 보존 의무와 법의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및 검시업무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

3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검사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따라 검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의관(법의관의 자격을 갖추고 법의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포함), 검시보조자가 있는데, 제정안의 검시 관련 기록 보존의 주체는 법의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검시보조자의 기록 보존의무 또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5. 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시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는 한편, 법의관의 양성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 정 안
제15조(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시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의관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관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의관 양성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의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법의관 양성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 정 안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의관 양성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7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나. 검토사항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결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법의관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검건수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 과중에 따라 법의학 분야의 사기 및 역량이 저하되고 있음³⁵⁾.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11.
정원	53	53	51	49	50
현원	32	30	33	33	32

※자료: 행정안전부

<부검건수 집도주체별 부검 건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11.
총건수	9,110	9,131	8,428	8,059	7,180
법의관집도	6,409	6,937	5,668	5,375	4,785
촉탁의집도	2,701	2,194	2,760	2,684	2,395

※자료: 행정안전부

35) “부검하는 의사 법의관도 인력부족…‘번 아웃’으로 스러져간다“, 청년의사뉴스, 2021. 7. 21.
 ”위기의 법의학… 국과수 법의관 정원 39% 결원“, 헬스조선, 2023. 10. 5.

제정안에 따르면 법의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에서 ①병리학 등 전문의 자격 취득, ②전문의 자격 취득 후 법의학 및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 ③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 또는 해부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 ④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검시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서 관련 교육과정 수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④법의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수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법의관 양성기관 지정 및 법의관 양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과학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었으며 법의, 심리, 유전자, 독성, 화학, 안전, 디지털, 교통 분야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임.

6. 권한의 위임, 벌칙 및 과태료(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법의관의 직무 수행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의관 양성기관을 지정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제정안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벌칙)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법의관의 직무 수행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법의관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나. 검토사항

(1) 권한의 위임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안 제18조 및 제19조)

제정안 제18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게 위임하려는 규정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 제19조는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법의관 직무 대행자를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8조제3항에 따른 법의관 직무 대행자는 검시보조자이며, 제정안은 검시보조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시보조자의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겠음.

(2) 벌칙 및 과태료(안 제20조 및 제21조)

제정안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에 따라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사람은 검시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결국 법의관, 검시보조자, 법의관 직무대행자가 해당됨. 그런데, 법의관과 검시보조자의 신분은 공무원이고 법의관 직무대행자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무상 비밀 누설에 관해 제정안에서 별도의 벌칙을 정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127조³⁶⁾에 따라 2년 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제정안은 이와 달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제정안 제21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의관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제16조에 따라 법의관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7. 부칙

제정안 부칙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의관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른 법의관의 직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의사는 제6조에 따른 법의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른 직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의사는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6)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정안에 따라 법의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며, 「의료법」 제26조³⁷⁾ 등에 따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검안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34

37) 「의료법」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